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0일, 남인순·김대식의원 등
33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6.)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김대식 의원)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u>의료인</u> 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의 연한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 4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²⁾ 현행 법령은 물리치료과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리치료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의 수업연한 연장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1)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있겠으나, 그 연장 여부의 구체적 타당성, 타 의료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 체계는 전문대학의 3년제 과정과 대학의 4년제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두 과정 모두 졸업 이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받으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⁴⁾

다만, 두 학제는 같은 면허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물리치료사의 심화과정을 위한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 모두 학사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⁵⁾⁶⁾ 3년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년제 과정을 다시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⁷⁾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5)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6)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기준 물리치료과 3년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39개 중 33개 학교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1년 수업연한을 추가 운영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전체 물리치료과 3년제 입학정원 2,300명 기준 대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은 842명으로 약 37%에 달하고 있음.

< 2023학년도 물리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대학 현황 >

(단위 : 개, 명)

	전문대학			대학	대학수 합계	학부 입학정원	비율 전공심화 학사과정 입학정원 /전문대 학부입학 정원
	전문학사 (3년제 대학수)	전공심화 학사과정* (입학정원)	전문기술 석사과정	학사 (4년제 대학수)			
3년제 대학	39	33 (842명)	2		39	2,300	842 (36.7%)
4년제 대학				44	44	1,967	
계	39	33	2	44	83	4,26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통계('23.4.1. 입학정원 기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3.3월. 입학정원 기준)

※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 과정은 39개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전문대학이 3년제 과정인 물리치료사 교육체계를 4년제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 전문대학 물리치료사학과를 졸업한 학생도 물리치료사의 심화과정을 위한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로 바로 진학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이 4년제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간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 간 서열화가 뚜렷한 편임을 고려할 때, 같은 물리치료사 면허임에도 다른 대우를 받는 문제가 전문대학에 4년제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묶어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⁸⁾

물리치료사에 대한 4년제 과정 도입은 다른 의료기사들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직역으로 구분하거나, 다른 의료기사들의 4년제 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법안」⁹⁾이 상정된 바 있음.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9)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219호

< 학제별 의료기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

(단위 : 명)

구분	전문대학(A)	전공심화 과정정원 (B)	전공심화 정원비율 (B/A)	일반대학(C)	대학원	
					석사 (D(D/C))	박사
물리치료과	2,300	842	37%	1,932	298(15%)	68
작업치료과	1,111	184	17%	1,310	90(7%)	18
임상병리과	1,746	412	24%	1,199	36(3%)	11
방사선과	1,592	339	21%	818	61(7%)	20
치위생과	3,882	575	15%	1,205	29(2%)	13
치기공과	968	165	17%	220	8(4%)	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통계('23.4.1.기준)

교육부는 물리치료과의 전문대 입학정원 대비 전공심화과정 정원 비율(37%)이 의료기사 양성학과 중 가장 높아 타 의료기사 양성학과 대비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사학위 취득 수요가 높다는 점, 개정안이 전문대학이 3년제 혹은 4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이의가 없음.

대학과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학 및 관련 협회 의견 >

- (동의대, 김해대 등 7개교) 이견없음
 - 체계적인 물리치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4년제 과정으로 개설 필요
- (우석대, 부산보건대 등 7개교) 수정동의
 - 작업치료과(7개교), 임상병리과(1개교), 전체 의료기사(1개교)도 4년제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견없음
 -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 설문조사 결과, 협회원 83개 대학 중 80개 대학이 개정에 찬성 (96.4%)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견없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수정동의
 -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 전체로 확대 필요
-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타 의료기사 직종과의 형평성, 교육 비용 상승 문제, 물리치료사 면허제도의 합리적 운영 문제(교육과정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담보하기 어려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남인순 의원,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을 “의료인·의료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인을”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u>의료인</u>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 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u>의료인</u> 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의3(<u>의료인 · 의료기사</u> 양 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u>물리치료사</u> 를-----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